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3
----------	-----

제출년월일 : 2016. 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의결주문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출장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도록 적용 법령 및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단가 인상(안 제4조 [별표] 국내여비지급표)

- 서울특별시 출장의 경우 숙박비를 50,000원 → 70,000원으로 인상
- 광역시 출장의 경우 숙박비를 50,000원 → 60,000원으로 인상
- 그 밖의 지역 출장의 경우 숙박비를 40,000원 → 50,000원으로 인상

나. 정부조직개편으로 관련 부처 변경 및 용어 변경사항 반영

(안 제6조)

- 안전행정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 관용차량 ⇒ 공용차량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5. 10. 23. ~ 11. 12.)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 원안동의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전단 중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국내여비 지급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 동 차 (버스)운임	숙박비(1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 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 역은 50,000)

- 비 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2. (생략)</p> <p>3.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 제1항 단서 중 “<u>안전행정부장관</u>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p> <p>4.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제1항 단서 중 “「<u>공용차량 관리 규정</u>」 제4조”는 “「<u>평창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u>」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p> <p>5.·6. (생략)</p> <p>7.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 중 “<u>안전행정부장관</u> 및 <u>기획재정부장관</u>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u>안전행정부장관</u> 및 <u>기획재정부장관</u>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p> <p>-----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인사혁신처장</u>과 ----- --.</p> <p>4.----- ----- ----- <u>공용차량</u>----- ----- -----.</p> <p>5.·6. (현행과 같음)</p> <p>7.----- -----<u>인사혁신처장</u>----- ----- -----<u>인사혁신처장</u>----- ----- -----.</p>



[붙임3]

## 관 련 법 령

###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9>

[별표 2] <개정 2015.1.6.>

### 국내 여비 지급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붙임4]

##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2016년 관외출장 여비 증가분(추정) : 22,360천원/년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지출액이 연간 22,360천원으로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의 의거 순증세출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해당됨.

### 4. 작성자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연락처	(033) 330 - 2242